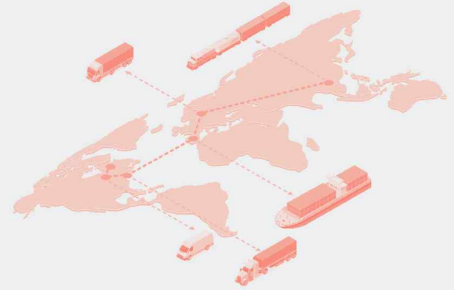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



목 차

I. EU 포장재 정책 개요	5
II. PPWR 주요 내용	8
1. 포장의 정의와 적용 범위	8
2.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요건	8
3. 재사용 및 리필	12
4. 라벨링 및 환경 관련 클레임	14
5. 경제주체별 의무	17
6. 폐기물 관리	20
7.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22
8. 폐기물 예방	23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25
[참고] PPWR 조항표	28

요 약

□ EU 포장재 전 생애주기 관리 위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발효('25.2.11)

- EU는 포장 폐기물 증가와 자원 낭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발효시키며, 기존 '포장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PPWD)'을 대체함.
- PPWR은 제품의 설계·제조·유통·소비·폐기 등 포장재의 전 생애주기(life-cycle)를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 EU 전역에서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 형태로 '26.8월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
- 기존의 재활용 중심 정책을 넘어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prevention) 단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포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성과 자원 효율성을 의무화함.
- 특히, 재사용·리필 시스템 구축,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강화, 포장 금지 품목 지정 등이 포함되며, 이는 기업의 제품 설계·공급망·표시 체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함.

□ PPWR 주요 내용 및 시행 일정

- 포장재 지속가능성 요건
 - '30년부터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성 평가 등급 중 D등급 이하 포장은 시장 출시가 제한됨.
 -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30년부터 최소 30~35%의 재활용 함량 사용 의무가 부과되며, PFAS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제한 기준이 명시됨.
 - 과대포장 방지 및 빈공간 비율 상한(50%)이 적용되며, 신선식품·HORECA(호텔·레스토랑·카페)용 등 특정 일회용 포장재는 '30년 이후 시장 출시가 금지됨.
- 라벨링 및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강화
 - '28~'30년까지 단계적으로 EU 통합 라벨링 체계가 도입되어, 포장 재질 구성·분리 배출 정보·재활용성 등이 그림문자(pictogram) 또는 QR코드로 표시되어야 함.
 - 제조자·수입자는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Annex VII)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원국별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등록 및 수수료 납부 의무가 강화됨.
 - 운송용·보호용 포장은 소비자용 라벨 부착이 면제될 수 있으나, 소재 식별 표시(LDPE, PP 등)를 추가할 경우 통관·검증 과정에서 유용함.
- 시행 일정
 - ('26년) PFAS·중금속 제한 시행, EPR 등록 양식 통일, 라벨 표준화 착수
 - ('27년) 재활용성 설계기준(DfR) 및 재활용성 등급 기준 제정(위임법)
 - ('30년) 재활용성 등급 의무화, 재활용 함량 요건, 재사용·리필 목표, 포장 금지 품목 시행
 - ('35년) 대규모 재활용 실현 단계(at scale) 적용 및 D등급 포장 완전 퇴출

I EU 포장재 정책 개요

□ 포장재와 순환경제 전환 배경

- EU 역내 포장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 부담 심화 및 정책적 대응 필요성 확대
 - '25.10.10일 유로스타트(Eurostat) 분석에 의하면, '23년 EU에서 발생한 포장 폐기물은 총 7,970만 톤이며, 1인당 177.8kg에 달함. 이는 '22년 대비 1인당 년 기준 EU에서 1인당 8.7kg 감소한 수치이지만, '1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21.2kg 많음.
 - 또한,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포장재는 EU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유발함.
 - 포장재는 물류와 제품 보호에 필수적이지만,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이에,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및 '순환경제 행동계획(CEAP)'을 통해 포장재를 자원 효율성 제고 및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과제로 지정함.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순환경제 행동계획(CEAP)>

- 유럽 그린딜은 EU가 '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포괄적 성장 전략으로, 산업·에너지·교통·농업 등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자원효율성·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 순환경제 행동계획(CEAP,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은 그린딜의 핵심 실행축으로, 제품의 설계·소비·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개선하여 자원 순환성과 폐기물 감축을 달성하려는 전략

□ 기존 지침(PPWD)에서 규정(PPWR)으로의 전환

- '94년 제정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Directive)'의 한계를 보완하고, 규정(Regulation) 형태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
 - '94년 제정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은 회원국별 회수·재활용 목표를 설정했으나, 국가 간 이행 격차와 규제 불일치로 인해 내부시장 통합 저해 및 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됨.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5.2.11일 발효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며, 설계·사용·수거·재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Life-cycle approach)를 도입함.
- PPWR은 통일된 기준을 통해 내부시장 조화(harmonisation)를 강화하고,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도모함.

□ PPWR 개요

- **(목표)** △포장 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감축, 재사용·리필 시스템 확대, △'30년까지 모든 포장을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확대, 신규 원자재 사용 축소, △'50년까지 기후중립 경로와의 정합성 확보
- **(적용 대상)** 산업, 상업, 가정 등 모든 분야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 **(제재)** PPWR 발효일 기준 24개월 이내 각 회원국은 위반 사항에 적용될 제재 규정을 국내법으로 마련해야 함.
- **(입법 경과)** EU 집행위원회 제안('22.11월)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11월) → EU 이사회 입장 채택('23.12월) → 3자 잠정 합의('24.3.4일) → 유럽의회 최종 승인(4.24일) → EU 이사회 최종 승인(12.16일) → EU 관보 게재('25.1.22일) → 발효(2.11일) → 적용('26.8.12일~)
- **(향후 일정)** EU 집행위원회는 비입법 행위(시행령·위임법)를 통해 세부 기술 기준 및 이행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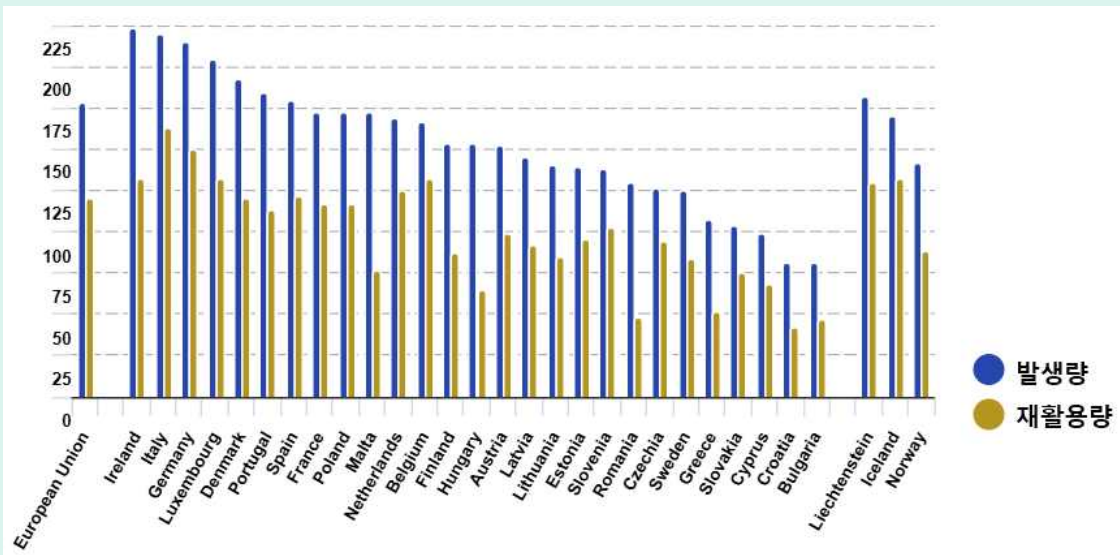
(참고) EU의 비입법 행위(Non-legislative act)

- 시행령(Implementing act) : 회원국 간 법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기술적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행위(예 : 서류 양식, 절차, 데이터 제출 방식 등)
- 위임법(Delegated act) : 기본 법률 제정 후, 비본질적 요소(non-essential elements)를 보완·수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정하는 행위(예 : 기술 기준 업데이트, 목록 추가 등)

<참고 : EU 포장 폐기물 관련 통계>

- 포장 폐기물 발생량 및 구성
 - '23년 EU에서 발생한 포장 폐기물은 7,970만 톤, 1인당 177.8kg에 달함.
 - 포장 폐기물 구성은 종이·판지 3,230만 톤(40.4%), 플라스틱 1,580만 톤(19.8%), 유리 1,500만 톤(18.8%), 목재 1,260만 톤(15.8%), 금속 390만 톤(4.9%), 기타 20만 톤(0.2%)으로 나타남.
 - EU 26개국에서 종이·판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가리아('22년 자료)에서만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28.4%)의 비중이 종이·판지(25.5%)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포장 폐기물 국별 발생량 및 재활용량
 - '23년 기준, 15개국에서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150kg 이상을 기록했으며, 200kg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아일랜드(223.1kg), 이탈리아(219.5kg), 독일(215.2kg), 룩셈부르크(204.5kg) 순임.
 - EU 국가 중 재활용량이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162.2kg), 독일(149.3kg), 룩셈부르크(132.4kg), 아일랜드(131.6kg, 발생량 최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량 높음) 순
 - '23년에 재활용률 70%('30년 목표)에 이미 달성한 국가는 7개국(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이며, 목표에 근접(60% 이상)한 국가는 13개국임.

<'23년 EU 포장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단위 : kg/인)>



- 경량 플라스틱 봉투 소비
 - 플라스틱 봉투 지침(Directive 2015/720)은 EU 내 경량 플라스틱 봉투(LPCBs, lightweight plastic carrier bags) 소비 감축을 목표('25년까지 1인당 소비량 40개 미만)로 제정됨.
 - '23년 EU 시민 1인당 평균 65개의 경량 플라스틱 봉투를 소비했으며, '22년 67개, '18년 95개 대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25년 목표(40개 미만)를 이미 달성한 국가는 총 9개국이며, 벨기에(4개), 폴란드(7개), 포르투갈·오스트리아(각 14개), 스웨덴(22개), 덴마크(23개), 룩셈부르크(25개), 네덜란드·독일(각 31개)임.

자료 : Eurostat('25.10.10일)

II

PPWR 주요 내용

1. 포장의 정의와 적용 범위

- PPWR은 사용 재질이나 사용 장소(산업·상업·가정 등)에 관계없이,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
 - 포장(packaging)이란 재질에 무관하게,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나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 보호, 취급, 운송, 진열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함.
 - 제3조에서는 PPWR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포장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판매 포장(sales packaging) :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제품과 함께 하나의 판매 단위를 구성하는 포장
 - 집합 포장(grouped packaging) : 여러 개의 판매 단위를 묶거나 진열·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포장
 - 운송 포장(transport packaging) : 제품의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포장(단, 운송용 컨테이너는 제외)
 -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용 포장, 서비스 포장(식음료 테이크아웃 등), 다층·복합소재 포장* 등도 포함됨.
- * 다층 포장(multi-layer packaging)은 서로 다른 재질의 층이 결합된 포장이며, 복합소재 포장(composite packaging)은 둘 이상의 다른 재질로 구성된 포장을 의미함.

2.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요건

(1) 유해물질 관리

- 포장재 내 유해물질(SoC, Substances of Concern) 사용을 최소화하고,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 회원국은 '25.12.31일까지 특정 물질이 재사용·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해야 함.
- 집행위원회는 ECHA의 지원을 받아 '26.12.31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
- 주요 제한 기준
 - (중금속 제한)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합산 농도를 100mg/kg 이하로 제한
 - (PFAS 제한) '26.8.12일부터 식품 접촉 포장에 적용되며, 아래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포함된 포장은 시장 출시 금지
 - 개별 PFAS : 25ppb
 - 합산 PFAS : 250ppb
 - 전체 PFAS(고분자 포함) : 50ppm(총 불소 함량이 50mg/kg 초과 시, 기술문서로 증빙 필요)
 - 단,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재사용 중인 포장재는 회수 의무 면제

(참고)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 내열성, 내수성, 발수성이 뛰어나며, 열·화학적 분해가 거의 불가능해서 “영구화학물질(Forever chemicals)”이라고도 불림. 방수, 코팅, 윤활제, 비점착 제품(프라이팬) 등 다양한 산업용 및 소비재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2) 재활용성 요건

- 모든 포장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재활용성 등급제를 도입해 포장의 재활용성에 따라 시장 진입을 차등화 하였으며, '30년부터 모든 포장은 재활용성 등급 평가를 거쳐야 함.
 - A~C 등급 : EU 시장 출시 가능
 - D 등급 : '30.1.1일부터 시장 출시 금지

- 등급 산정 시 고려 요소 : 포장 재질 구조, 다층·복합 구조 여부, 크기 및 분리 용이성, 유해물질 함유 여부, 기술적 재활용 효율, 경제성 등
-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의 분담금(eco-modulated fees)은 포장의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
-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포장 재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27.1.1일까지 위임법(Delegated Act) 채택 예정

(3) 재활용 원료 의무화

-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 이는 재활용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순환경제의 폐쇄적인 구조(closed-loop)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임.

<재활용 함량 최소 의무 비율>

	'30.1.1일부터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3년 후, 더 늦은 시점부터)	'40.1.1일부터
PET 기반 접촉민감 포장	30%	50%
비(非)PET 접촉민감 포장	10%	25%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	65%
기타 플라스틱 포장	35%	65%

자료 : PPWR 규정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주 : '접촉민감 포장(contact-sensitive packaging)'이란 내용물과 직접 닿는 포장재(내부 포장)를 의미

- EU 외 지역에서 생산된 재활용 원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재활용 공정이 EU의 지속가능성 기준과 동등한 수준임을 평가·검증·인증(assessment, verification, certification)*받아야 함.

* 이에 대한 세부 시행령(Implementing act)은 '26.12.31일까지 채택 예정

- 다만, 의약품 포장 등과 같이 품질·위생 유지가 필수적인 포장의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며, 전체 포장 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원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4) 바이오 기반 포장재

- 포장재 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예정
 - '28년까지 집행위원회는 바이오 기반 포장재의 기술 수준 및 환경 성능에 관한 종합 검토를 실시하고, 재생에너지지침(RED II)의 '지속 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바이오 원료 사용 요건을 마련할 예정
 - 식품 접촉용 포장재 중 적절한 재활용 기술이 부재한 경우, 재활용 함유 목표를 바이오 기반 원료 사용분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음.

(5)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

- 특정 포장 형식은 산업용 또는 가정용 퇴비화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티백이나 과일·채소 부착 스티커, 경량 및 초경량 비닐봉투 등은 '28.2.12일 부터 산업적 퇴비화(compostable)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 포장재에 '퇴비화 가능' 및 '가정용 퇴비화 가능' 여부 라벨 표시 의무화
 - 산업적 퇴비화 관련 기존 기술 표준(EN 13432:2000)은 개정될 예정이며, 가정용 퇴비화에 대한 신규 표준이 마련될 예정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련 유럽 표준(EN Standards)>

- EU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제정함. 유럽표준화기구(CENELEC)는 포장의 필수 요건에 관한 조화표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표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 포장은 PPWD에서 규정한 필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됨.

표준 번호	주요 내용
EN 13427:2004	포장 및 포장 폐기물 분야에서 유럽표준 사용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EN 13428:2004	제조 및 구성 관련 요구사항 - 원천 감축(Source reduction)을 통한 포장 폐기물 예방
EN 13429:2004	재사용 가능한 포장 요건
EN 13430:2004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요건
EN 13431:2004	에너지 회수(소각 열회수 포함)가 가능한 포장 요건(최소 발열량 기준 포함)
EN 13432:2000 (Commission Decision 2001/524/EC)	퇴비화 및 생분해를 통한 회수가 가능한 포장 요건 - 시험 체계 및 최종 승인 평가 기준

자료 : EU 집행위원회(PPWD)

(6) 포장 최소화 및 빈공간 제한

- 포장은 제품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중량과 부피로 설계되어야 함.
- 과대포장 또는 시각적 오인을 유발하는 디자인(이중벽·가짜 바닥 등)을 금지함.
- 단, 지리적 표시(PGI, PDO)* 또는 원산지 표시를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디자인권·상표권이 있는 와인, 증류주, 수공예품, 산업제품 등의 포장은 감축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참고) EU의 지리적 표시 제도(GI, Geographical Indications)

-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생산, 가공, 제조의 모든 과정이 특정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예 :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샴페인)
-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생산, 가공, 제조 중 하나 이상의 단계만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인정됨. (예 : 파르마 햄)

- 집행위원회는 '27.2.12일까지 유럽표준화기구에 요청하여, 포장 최소화 요건의 산정 및 측정 방법을 규정하는 조화표준(Harmonised Standard)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할 예정
- 또한, '30.1.1일 또는 추후 채택된 시행령 발효 후 3년 중 더 늦은 시점부터 포장 내 빈공간 비율(empty space ratio)은 최대 50% 이하로 제한됨.
 - 단, 판매 포장의 경우(예 : 깨지기 쉬운 유리제품, 민감한 전자부품 등) 제품 보호 및 기능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예외로 인정됨.
 - 집행위원회는 규정 발효 후 3년 이내 제품 형태와 포장 특성을 반영한 빈공간 비율 산정 방법을 시행령으로 제정해야 함.

3. 재사용 및 리필

(1) 재사용 관련 요건 및 목표

- PPWR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회수·세척·리필·재충전 과정을 거쳐 동일한 용도로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는 포장”으로 정의함.
 - 재사용 포장은 내구성, 위생성, 추적 가능성 등 일정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사용 주기 동안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 절약 효과를 입증해야 함.
- 재사용 포장의 설계 요건
 - 충분한 기계적 강도 및 변형 저항성을 갖출 것
 - 세척·소독·재충전 시 포장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 것
 - 재사용 수명이 종료된 후 재활용 가능할 것
 - ‘재사용 가능’ 라벨을 부착하고, QR코드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해 재사용 시스템·수거 지점·회전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참고) 라벨링 적용 시점

- 일반 라벨링 의무 : '28.8.12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24개월 후 중 늦은 시점
- 재사용 포장 라벨링 : '29.2.12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30개월 후 중 늦은 시점
- 한편, 집행위원회는 '26.8.12일까지 라벨링 요건 및 형식에 관한 시행령 채택 예정

- PPWR은 부문별로 재사용 목표를 정량화하여 '30년 및 '40년까지 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운송 포장 및 판매 포장 : '30.1.1일부터 경제주체는 팔레트, 접이식 플라스틱 상자, 트레이, 플라스틱 크레이트, 캐니스터 등 사용 포장 전체 중 최소 40%('40.1.1일부터 7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전환
 - * 단, 위험물 운송용, 대형 장비·원자재 운송용 맞춤형 포장, 골판지·판지 상자 형태의 포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집합 포장 : 상자 형태(판지 제외)의 집합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30.1.1일부터 전체 포장의 최소 10%('40.1.1일부터 최소 25%)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확보

- 음료(주류·비주류) 제품 판매 포장 : 최종 유통업자는 '30.1.1일부터 판매 제품의 최소 10%(40.1.1일부터 최소 4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제공해야 함.

(2) 리필 관련 의무

- 리필(refill) 관련 PPWR에 명시된 경제주체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최종 판매자(소매업체) 중 판매면적이 400m² 이상인 매장은 '30.1.1일부터 판매 면적의 최소 10%를 리필 스테이션(리필 전용 구역)으로 전환해야 함.
 - 식음료 업종(HORECA*)에서는 규정 발효 후 2년 이내(즉, '27.2.12일까지) 소비자가 개인 용기(bring-your-own container)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 HORECA : Hotel, Restaurant, Café/Catering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숙박·외식·카페/케이타링 업계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
 - 또한 규정 발효 3년 내('28.2.12일까지), HORECA 사업자는 테이크아웃 포장 형태로 식음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재사용 가능한 포장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4. 라벨링 및 환경 관련 클레임(Environmental Claims)

(1) 라벨링 관련 규정

- PPWR은 소비자의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포장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수거용기에 조화된 라벨(harmonised labels) 부착을 의무화함.
 - 해당 라벨은 재질 구성(material composition)을 기반으로 하며, 시각적 픽토그램(pictogram)과 디지털 정보(QR코드 등)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라벨 부착 의무는 규정 발효 후 42개월 또는 집행위 시행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되며, 집행위원회는 규정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관련 시행령을 채택해야 함.
- 보증금 반환제(DRS, Deposit and Return System) 대상 포장 및 운송 포장은 라벨 부착 의무에서 제외되나, 전자상거래 포장은 포함됨.
- 포장 라벨의 내용 및 형식
 - 유해물질(SoC) 포함 포장 : 표준화된 디지털 마킹 기술을 통해 표시해야 함. 관련 시행령은 '30.1.1일까지 집행위원회가 채택할 예정
 - 재사용 포장 : 재사용 가능 여부 및 수거지점 정보 등을 포함한 라벨과 QR코드를 부착해야 하며, 일회용 포장(SUP, single-use packaging)과 명확히 구분 표시해야 함. 규정 발효 후 48개월 ('29.2.12일), 또는 시행령 발효 후 30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
 -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관련 표시는 디지털 형태만 허용되며, 이 표시에는 등록번호, PRO(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sation) 정보, 소재국 코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보증금 반환제(DRS) 라벨의 경우, 국가별 표시 체계를 유지하되, 조화된 색상 라벨 사용 가능. 단, 비의무적 DRS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방지해야 함.
- 포장 폐기물 수거용기 라벨의 내용 및 형식
 - 소비자가 포장 폐기물을 재질별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각 수거용기(쓰레기통·봉투)에 조화된 픽토그램 라벨을 부착해야 함.
 - 하나의 수거용기에 복수의 라벨 부착이 가능하나, 보증금·환불제 대상 용기는 라벨 부착 의무에서 제외됨.

- 규정 발효 후 42개월('28.8.12일) 또는 시행령 채택 후 30개월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적용되며, 집행위원회는 '26.8.12일까지 회원국별 수거 시스템 및 복합포장 특성을 고려한 조화된 라벨 및 형식 사양을 시행령으로 채택해야 함.

<포장 및 수거용기 라벨링 예시>



자료 : PPWR 관련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발표자료('24.12.16일)

<PPWR 라벨링 제도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일정
포장 라벨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재질 구성에 기반한 조화된 라벨 부착 의무 · 픽토그램 기반 시각 표시 · QR코드 등 디지털 정보 병행 제공 가능 · 단, 운송포장, 보증금 반환제(DRS) 포장 제외.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은 공간 제약 시 예외 적용 	규정 발효 후 42개월('28.8.12) 또는 시행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시점 (시행령 '26.8.12일까지 채택 예정)
재사용 포장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usable' 문구 또는 라벨 부착 · 수거지점 정보, 회전 횟수 등은 QR코드로 제공 · 일회용 포장(SUP)과 명확히 구분 	'29.2.12일 또는 시행령 발효 후 30개월 중 늦은 시점
유해물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이 포함된 포장은 '디지털 마킹'으로 표시 · 각 재질별 물질명 및 농도 명시 	'30.1.1일까지 관련 시행령 채택 예정
확대 생산자 책임제 (EPR)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방식만 허용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식 금지 	'27.2.12일 이후 적용
보증금 반환제 (DRS)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라벨 체계 유지 가능 · 회원국은 조화된 색상 라벨 선택적 도입 가능 	포장 라벨링(제12조) 시행 시점 이후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일정
수거용기 라벨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폐기물 수거용기에 재질별 조화된 픽토그램 라벨 부착 의무 · 분리배출 인식 제고 목적 · DRS 대상 용기 제외, 하나의 용기에 복수 라벨 부착 가능 	<p>규정 발효 후 42개월('28.8.12) 또는 시행령 채택 후 30개월 중 늦은 시점 (시행령 '26.8.12일까지 채택 예정)</p>

자료 : PPWR 규정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2) 환경 관련 클레임(Environmental Claims) 규정

- PPWR은 포장재 관련 ‘그린 클레임(green claims)’을 엄격히 제한
 - 이는 기업이 ‘친환경’, ‘재활용 가능’,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 등의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비자 오인 및 그린워싱 방지를 목적으로 함.

(참고) 그린 클레임과 그린워싱

- 그린 클레임 : 소비자에게 환경적 이점을 암시하거나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모든 표현
- 그린워싱 : ‘친환경’, ‘재활용 가능’ 등 이런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

- 주요 원칙
 - ‘환경 관련 클레임’은 PPWR에서 규정한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특성에 대해서만 가능함. 단순히 ‘recyclable’, ‘contains recycled plastic’ 등 법정 기준 충족 수준의 문구만으로는 주장 불가
 - 모든 주장 내용은 정량적 근거(수치·검증서)에 기반해야 하며, 제품 단위별 또는 포장 구성요소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 * 해당 주장은 그 내용이 (i) 개별 포장 단위, (ii) 포장 단위의 일부, (iii) 경제주체가 시장에 출시한 전체 포장 중 어느 범위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명시해야 함.

5. 경제주체별 의무

(1) 제조자의 의무

- 제조자(manufacturer)란,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packaging) 또는 포장된 제품(packaged product)을 설계(design)하거나 제조(manufacture)한 자를 의미
 - 단, 해당 제조자가 초소형기업(micro-enterprise)이며, 해당 포장 공급자가 동일 회원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공급자(supplier)가 '제조자'로 간주됨.
- 기본 의무
 - 제조자는 지속가능성 요건 및 라벨링 요건을 충족한 포장만을 EU 시장에 출시해야 하며,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기술문서를 작성·보관해야 함.
 - 포장 설계 변경이나 적용 표준의 개정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이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업데이트해야 함.
 - 포장이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해당 사실을 시장감시기관(MSA,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에 통보해야 함.
 - 제조자는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MSA의 요청 시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함.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

- **기술문서(TD)** : 공급망을 따라 기술문서가 전달되어야 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해야 함.
 - △포장 및 그 의도된 용도, △도면, 사용 재료 및 구성요소, △적용된 표준 및 기술사양 목록, △평가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 △시험 보고서
- **적합성 선언서(DoC)** : 부속서 VIII의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최신 상태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단일 적합성 선언서(single DoC)로 포장과 포장된 제품을 통합하여 발행 가능

부속서 VIII - EU 적합성 선언서(예시)

1. 번호(No.) : 포장의 고유 식별번호
2. 제조자 이름 및 주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제조자의 공인대리인 이름과 주소 :
3. 본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자의 단독 책임 하에 발행됩니다.
4. 선언 대상(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포장 식별) : 포장 설명
5. 적용된 관련 EU 법령의 참조 :
6. 적용된 관련 조화 표준 또는 공통 사항에 대한 참조, 적합성이 선언된 기타 기술 사양에 대한 참조 :
7.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 지정기관(Notified Body) 및 세부 정보 - 인증서 번호, 발행일, 유효기간 및 조건 등
8. 추가 정보 : 대리인 서명, 발급 장소 및 날짜, 이름, 직책, 서명 등

(2) 기타 경제주체의 의무

- 수입자(Importer)는 EU 내 설립되어 제3국으로부터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를 의미함.
 - 제조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나, 의무 범위는 수입 제품에 한정되며, 초소형기업(microenterprise)에 대한 예외 없음.
- 유통자(Distributor)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제외한 공급망 내에서 포장재를 시장에 유통·판매하는 자를 의미함.
 - 유통자는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등록, 라벨 부착 여부, 포장 및 제조자·수입자 식별 정보의 명확성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
-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은 제조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아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 위임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적합성 평가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됨.
- 공급자는 포장재 또는 포장 재료를 제조자 등에게 공급하는 자
 - 제조자가 규정 준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시장감시기관(MSA)과 협력하여 공급망 구조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음.

<PPWR 경제주체별 의무 요약>

주체	내용
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12조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만 EU 시장에 출시 가능 · 출시 전 적합성 평가(제38조) 실시, 기술문서(부속서 VII) 작성, EU 적합성 선언서(제39조) 발행 · 문서 보관 의무 : (일회용 포장) 출시 후 5년, (재사용 포장) 출시 후 10년 · 일련번호 등 식별 표시, 시리즈 생산 시 지속적 적합성 확보 의무
포장 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의 적합성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문서 제공 의무
공인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는 서면 위임장을 통해 공인 대리인 지정 가능 · 공인 대리인은 문서 보관, 관할 당국과 협력, 적합성 입증 자료 제공 등의 의무 수행 가능 · 단, 기술문서 작성 등 제조자 고유 의무는 위임 불가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12조 요건에 부합하는 포장만 수입·판매 가능 · 출시 전,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라벨링, 필수 문서 동반 여부 확인 · 제조자명·상표·연락처 표시 확인 및 보관·운송 중 규정 준수 보장 · 비적합 시 시정·회수·당국 통보 의무 · 문서 보관 의무 : (일회용 포장) 출시 후 5년, (재사용 포장) 출시 후 10년
유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WR 요건 준수 및 생산자의 EPR 등록 및 라벨링 확인, 제조자·수입자 표시 확인 · 보관·운송 중 규정 준수 보장, 비적합 시 시정·회수·당국 통보 의무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배송 과정에서 포장의 적합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
제조자의 의무가 수입자·유통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유통자가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이미 출시된 포장을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할 경우, 제조자로 간주되어 제15조의 의무 적용 · 단, 해당 수입자·유통자가 초소형기업(micro)에 해당하고, 해당 포장의 공급자가 EU 내 소재할 경우, 공급자가 제15조상 제조자로 간주됨.
경제주체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주체는 공급망 상 이전·이후 거래자 정보를 보관하고, 당국 요청 시 제출 의무를 가짐. · 보관 기간 : (일회용 포장) 공급일로부터 5년간, (재사용 포장) 10년
포장 폐기물 관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폐기물 관리자는 매년 관할 당국·생산자·생산자책임기구(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에 부속서 XII 표3에 명시된 포장 폐기물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자료 : PPWR 규정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6. 폐기물 관리

(1) 보증금 반환제(DRS, Deposit and Return Systems)

- '29.1.1일까지 각 회원국은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음료 포장재의 90%를 별도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이를 위해 회원국은 보증금 반환제(DRS)를 구축하고, 판매 시점에 보증금(deposit)을 부과하도록 해야 함.
-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 와인 등 포도주 제품, 포도 외 과일 또는 채소로부터 제조된 기타 발효 음료, 알코올 함유 증류주, 우유 및 유제품 등
- '26년 기준 별도 수거율이 80% 이상인 회원국은 '28.1.1일까지 집행 위원회에 면제 요청 및 이행계획 제출 시, DRS 구축 의무 면제 가능
- 회원국은 '29.1.1일까지 새로 구축된 DRS가 부속서 X에 명시된 최소 요건(minimum 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함.

(2) 수거(Collection)

- 재활용을 위해 설계된 포장재는 반드시 별도로 수거되어야 함.
- 회원국은 공공장소, 상업시설, 주거지역 등 전 지역을 포괄하는 전국 단위의 포장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재활용 설계 요건(DfR, Design for Recycling)을 충족한 포장재의 소각 및 매립은 금지됨.
- 회원국은 재활용 목표(recycling target) 및 재활용 원료 함량 목표(recycled content targets)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이에 부합하는 수거 목표(collection objectives)를 설정해야 함.

(3) 재활용 목표

- PPWR은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에서 설정된 재활용 목표를 유지함.

- 재활용 목표('25년까지 전체 포장 폐기물의 65%, '30년까지 70% 재활용)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회원국의 재활용률 제고 및 집행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둠.
- 다만, 회원국은 일정 조건 하에서 '25년 및 '30년의 재질별(material-specific) 재활용 목표 달성 시점을 연기할 수 있음. 다만, 연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 및 이행 일정을 포함한 공식 요청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집행위원회는 '32.2.12일까지 '30년 재활용 목표의 상향 또는 추가 설정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

<재질별 최소 재활용 비율 목표>

재질 구분	'25.12.31일까지	'30.12.31일까지
플라스틱	50%	55%
목재	25%	30%
철금속	70%	80%
알루미늄	50%	60%
유리	70%	75%
종이·판지	75%	85%

자료 : PPWR 규정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7.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1) 개요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무는 '폐기물 기본 지침(WFD, Waste Framework Directive)' 제8조 및 제8a조에 근거함.

<폐기물 기본 지침(WFD) 제8조 및 제8a조>

- **제8조** : EPR의 개념적·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생산자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설계~폐기)에 걸쳐 폐기물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함.
- **제8a조** : 제8조의 일반 원칙을 구체화하며, EPR 제도를 운영하는 회원국 및 생산자에게 최소 요건(minimum requirements)을 부과함.
 - 주요 내용 : 경제주체의 책임 및 역할 정의, 비용 부담 원칙, 성과 측정 및 보고, 데이터 관리, 감독 및 집행 등

- EPR 의무의 책임 주체는 회원국 시장에 처음으로 포장을 출시하는 자로서,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될 수 있음.
- 초소형기업(micro-enterprise)에 대해서는 일반적 면제 규정은 없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 또는 조건부 면제 가능
- 제3국(역외) 생산자가 EU 역내 시장에 포장재를 최초로 출시하는 경우, 각 회원국 내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을 반드시 지정해야 함.

(2) 생산자 등록 및 보고

- 회원국은 생산자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producers)를 설치해야 하며, 등록 및 보고와 관련된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생산자 또는 공인 대리인은 해당 회원국 시장에 처음으로 포장을 출시하는 경우, 반드시 그 국가의 등록부에 등록해야 함. 단, 생산자가 EPR 의무를 제3의 생산자책임조직(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에 위탁한 경우, PRO가 대신 의무를 이행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산자로부터 등록부를 통해 EPR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EPR 분담금(EPR fees)을 대신 납부할 수 있음. 또한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도 동일하게 EPR 준수 여부를 검증해야 함.
 - 연간 포장재 출시량이 10톤 미만인 생산자는 간소화된 형태의 보고가 허용되며,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할 수 있음.
 - 집행위원회는 '26.2.12일까지(규정 발효 후 12개월 이내) 시행령을 통해 등록 및 보고의 형식, 데이터 세분화 수준, 포장 유형 및 재질 분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

8. 폐기물 예방

(1) 감축 목표

- 회원국은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18년 대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함.
 - '30년까지 최소 5%, '35년까지 10%, '40년까지 15% 감축
 - 집행위원회는 '32.2.12일까지 위의 감축 목표를 재검토하고, 재질별 감축 목표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함.

(2)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

- 회원국은 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의 소비를 지속 감축해야 함.
 - 연간 1인당 소비량이 최대 40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초경량 플라스틱 봉투(VLPCBs*)는 위생용·식품 포장용을 제외하고는 시장 출시가 금지됨. 단, 퇴비화 가능한 초경량 플라스틱 봉투는 EU 차원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VLPCBs(Very Light Plastic Carrier Bags)는 두께가 15마이크로미터(μm) 미만인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로, 주로 과일·야채 등 위생 포장용으로 사용됨.

(3) 특정 포장재 사용 금지

- '30.1.1일부터 부속서 V에 명시된 포장 형식 및 용도에 해당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시장 출시가 금지됨.
 - 해당 대상은 부속서 V에 명시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6종이며, 집행위원회는 PPWR 발효 24개월 이내 회원국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협의하여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부속서 V - 금지 대상 포장 형식 및 용도>

- ① 일회용 플라스틱 그룹 포장재(grouped packaging)
- ② 가공되지 않은 신선 과일 및 채소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 ③ HORECA 업종 내 매장에서 소비되는 식음료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 ④ HORECA 부문에서 사용되는 소스, 잼, 커피크리머, 설탕, 양념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 ⑤ 개별 예약 고객을 위한 숙박업 부문 일회용 포장재(예 : 샴푸, 린스, 바디로션 등)
- ⑥ 초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VLPCBs, Very Light Plastic Carrier Bags)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관련 법률 및 연계성

○ 타 법안과의 연계

①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 SUPD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의 금지·표시·감축을 다루는 반면, PPWR은 포장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함.

- SUPD로 이미 규제 중인 일부 일회용 포장 포맷은 PPWR에서 추가 제한·확대 적용으로 보완됨.

* 예 : 과대포장 금지, 재사용·빈공간 비율 요건, 라벨링 조화 등

② REACH 및 CLP

- REACH* : PPWR의 유해물질(SoC) 관리, 특히 식품접촉 포장 내 PFAS 제한 등은 REACH 체계 및 ECHA의 기술 작업과 연동됨.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제도를 의미함.

- CLP 규정* : 포장재 물질의 분류·라벨링 체계와 연계되어, 제품의 안전성·유해성 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함.

* 화학물질과 혼합물의 분류(Classification), 라벨링(Labelling), 포장(Packaging)에 관한 규정

○ EU 환경정책과의 상호작용

- 화학 규제와의 시너지 : PPWR의 PFAS 등 유해물질 제한과 디지털 마킹 체계는 ECHA의 활동과 정합성을 가지며, EU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전략(CSS)'의 실행 도구로 기능

- 환경·기후 정책과의 연계 : PPWR은 유럽 그린딜과 순환경제 행동 계획(CEAP)의 핵심 실행축으로, 자원 효율성 제고·온실가스 감축·소비자 분리배출 용이성 강화를 통해 '30년 재활용성 목표 및 '50년 기후중립에 기여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EU 역내 통합 규제 환경에 대한 사전 대응 필요
 - PPWR이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되면서, 회원국별 입법 차이가 사라지고 EU 전역에 직접 적용됨.
 - 한국 기업의 EU 진출 시, 각 회원국별 규제보다 'EU 공통 기준' 중심의 제품 설계 및 인증 전략이 필수화됨.
 - 발효 후 18개월('26.8.12일)부터 대부분의 조항이 시행되므로, '25년 중 선제적 기술 대응 및 공급망 점검이 필요함.
-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순환성·재사용성 강화
 - '30년부터 모든 포장은 재활용성 등급 A~C를 충족해야 시장 출시가 가능하므로, 재활용 가능한 포장(Design for Recycling(DfR)) 기준을 반영한 포장 설계가 요구됨.
 - 재사용 포장(Reusable packaging) 및 리필 시스템의 확산이 예상되므로, 내구성·세척성·디지털 추적성 확보를 위한 설계 기술 도입 필요
- EPR(확대 생산자 책임제) 비용 부담 및 PRO 협력 전략 수립
 - 생산자는 EPR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생산자책임조직(PRO)를 통해 의무를 위탁해야 하므로, 국가별 PRO 제도 구조 및 분담금 산정 기준(eco-modulated fees) 파악이 중요함.
 - 특히 포장재 재질·재활용성 등급별 차등 부과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경량화·단일재질화 설계가 비용 절감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 라벨링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28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조화된 라벨(harmonised labels) 및 디지털 정보(QR코드 등) 요건에 대비해, 재질 정보·EPR 등록번호·유해물질 표시 등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특히 EU 내 플랫폼 판매자 및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도 EPR 준수 책임을 부담하므로, 수출입 및 유통 단계에서의 협업 체계 정비가 요구됨.
- 규제 대응을 기회로 전환하는 지속가능 포장 전략 필요
 - PPWR은 규제이자 동시에 순환경제 산업의 신성장 시장을 창출하는 제도임.
 - 재활용 원료(Recycled content) 확대, 바이오 기반 소재(Bio-based materials) 개발, 재사용 포장 서비스 등은 한국 기업의 친환경 포장 솔루션 수출 기회로 작용 가능
 - EU의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지속가능 규제와 연계한 통합 ESG 패키징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중요

참고

PPWR 조항표 * 규정 원문([링크](#))

구분	조항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5장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경제주체의 의무	제24조	포장 최소화 의무	
	제2조	적용범위		제25조	특정 포장 형식의 사용 제한	
	제3조	정의		제26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과 관련된 의무	
	제4조	자유로운 이동 포장재 내 물질에 대한 요건		제27조	재사용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의무	
제2장 지속가능성 요건	제5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		제28조	리필 관련 의무	
	제6조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함량 최소 비율		제29조	재사용 목표	
	제7조	바이오 기반 포장재		제30조	재사용 목표 달성도 산정 규칙	
	제8조	퇴비화 가능 포장재		제31조	재사용 목표에 관한 관할 당국 보고	
	제9조	포장 최소화		제32조	테이크아웃 부문의 리필 의무	
	제10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제33조	테이크아웃 부문의 재사용 제공 의무	
	제11조	포장 라벨링		제6장 플라스틱 쇼핑백	제34조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
제12조	포장 폐기물 수거를 위한 폐기물 용기 라벨링	제7장 포장의 적합성	제35조		시험, 측정 및 산정 방법	
제13조	환경 관련 클레임		제36조		적합성 추정	
제3장 라벨링, 표식 및 정보에 관한 요건	제14조		제조자의 의무	제37조	공통 사양	
	제15조		포장 또는 포장재 공급자의 정보 제공 의무	제38조	적합성 평가 절차	
	제16조	공인 대리인	제39조	EU 적합성 선언		
	제17조	수입자의 의무	제1절. 일반 규정	제40조	관할당국	
	제18조	유통자의 의무	제8장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	제41조	조기 경보 보고서	
	제19조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42조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방지 프로그램	
	제20조	제조자의 의무가 수입자·유통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2절. 폐기물 방지	제43조	포장 폐기물 방지
	제21조	경제 운영자의 식별 포장 폐기물 관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				

구분	조항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8장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	제3절. 생산자 등록부 및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제10장 녹색 공공 조달	제63조	녹색 공공 조달
	제44조	생산자 등록부	제11장 위임 권한 및 위원회 절차	제64조	위임의 행사
	제45조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제65조	위원회 절차
	제46조	생산자 책임 조직	제12장 개정	제66조	규정(EU) 2019/1020의 개정
	제47조	확대 생산자 책임(EPR) 이행 승인		제67조	지침(EU) 2019/904의 개정
	제4절. 반환, 수거 및 보증금 반환 제도			제68조	제재
	제48조	반환 및 수거 시스템	제13장 종결 조항	제69조	평가
	제49조	의무적 수거		제70조	폐지 및 경과 규정
	제50조	보증금 반환 시스템		제71조	발효 및 적용
	제5절. 재사용과 리필			부속서I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한 포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품목 예시 목록
	제51조	재사용과 리필		부속서II	포장재 재활용성 평가를 위한 범주 및 매개변수
	제6절. 재활용 목표 및 재활용 촉진		부속서III	퇴비화 가능한 포장	
	제52조	재활용 목표 및 재활용 촉진	부속서IV	포장 최소화 평가 방법론	
	제53조	재활용 목표 달성도 산정 규칙	부속서V	포장 형식 사용 제한	
	제54조	재사용을 포함한 재활용 목표 달성도 산정 규칙	부속서VI	재사용 시스템 및 리필 스테이션에 대한 특정 요건	
	제7절. 정보제공 및 보고		부속서VII	적합성 평가 절차	
	제55조	포장 폐기물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부속서VIII	EU 적합성 선언	
	제56조	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부속서IX	제44조에 따른 등록부 등록 및 보고를 위한 정보	
제57조	포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부속서X	보증금 반환 제도의 최소 요건		
제9장 안전조치 절차	제58조	위험을 초래하는 포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처리 절차	부속서XI	제52조(2)항(d)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이행 계획	
	제59조	EU의 안전조치 절차	부속서XII	회원국이 자국 포장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야 할 데이터	
	제60조	규정을 준수하나 위험이 있는 포장	부속서XIII	PPWD-PPWR 대응표	
	제61조	EU 시장에 유입되는 포장에 대한 관리			
	제62조	형식적 불이행			

작 성 자

- 브뤼셀무역관 강지숙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주요 내용

Global Market Report 25-062

발행일	2025년 10월
발행인	강경성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브뤼셀무역관(+32-2-205-0089)

- ISBN : 979-11-402-1445-7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